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고단위플러스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**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내용 정정(상품종류에 6개월 연동형 추가)**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 고 |
|---|---|---|
| 고단위플러스 특약(구 하나은행) | 『고단위플러스』 특약 | |
| **제 1 조 적용범위**<br>고단위플러스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을 적용합니다. | **제 1 조 적용범위**<br>"고단위플러스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 | 구행명 삭제 |
| **제 2 조 예금과목**<br>(생략) | **제 2 조 예금과목**<br>(좌동) | |
| **제 3 조 상품의 종류**<br>① (생략)<br>② 「금리연동형」은 「1개월연동형」, 「3개월연동형」과 「1년연동형」 3종류가 있습니다. | **제 3 조 상품의 종류**<br>① (좌동)<br>② 「금리연동형」은 「1개월연동형」, 「3개월연동형」, 「6개월연동형」과 「1년연동형」 4종류가 있습니다. | 내용 정정<br>(6개월연동형 추가) |
| **제 4 조 ~ 제 12 조**<br>(생략) | **제 4 조 ~ 제 12 조**<br>(좌동) | |